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약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 4
주요내용 요약서 ····· 5
보험용어 해설 ····· 7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보통약관 ····· 8
제1조(목적) ····· 8
제2조(용어의 정의) ····· 8
제3조(보상하는 손해) ····· 9
제4조(손해배상 청구일자) ····· 9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0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11
제7조(보험금의 청구) ····· 11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1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12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12
제11조(보험금의 분담) ····· 12
제12조(손해방지의무) ····· 13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13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13
제15조(대위권) ····· 14
제1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 14
제17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 14
제18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 15
제19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 15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 15
제2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15
제21조2(양도) ····· 16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 16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 16
제24조(청약의 철회) ····· 16
제2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7
제26조(계약의 무효) ····· 17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8
제28조(조사) ····· 18

제29조(타인을 위한 계약) ····· 18
제30조(기록의 완비) ····· 18
제3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8
제3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19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9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9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0
제36조(계약의 해지) ····· 20
제3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21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21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21
제39조(보험료의 환급) ····· 21
제40조(분쟁의 조정) ····· 22
제41조(관할법원) ····· 22
제42조(소멸시효) ····· 22
제43조(약관의 해석) ····· 22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2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23
제46조(개인정보보호) ····· 23
제47조(준거법) ····· 23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2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특별약관 ····· 26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 26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 28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30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 30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 보장 추가특별약관 ····· 31
보험료정산Ⅲ 특별약관 ····· 31
보험료분납Ⅰ 특별약관 ····· 32
공동인수 특별약관 ····· 32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 3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33
전자서명 특별약관 ····· 34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 35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 35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37
개인정보 보호법 ····· 37
전자서명법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8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나)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재물손해·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 관계자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보험 이익의 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아래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직원
     3)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배액배상금을 포함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 라.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그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구제를 하는 계약으로,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됨.(이하 같습니다)

   - 바.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또는 훼손(이하 '사고'라 합니다)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손해배상 청구일자)
① 보험증권에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적용일자 이전에 발견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3. 신체장해(질병 또는 사망 포함)
4.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단,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겨서, 그 결과 제3조에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6.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누출
7.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10.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1. 다른 피보험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피보험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13.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누출 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나. 오염 물질의 검사, 감시, 청소, 제거, 누출 등의 방지, 처리, 무독화 또는 중화화의 지시 또는 요청. 오염 물질은 고체, 액체 혹은 기체 상태나 열을 띤 유해한 물질 또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1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15.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수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16. 제3자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17. 이 보험증권의 보험개시일 시점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동일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18. 항공기, 승강기, 자동차 또는 기타 실외의 선박・차량(인력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
19.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의 침해
20.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21. 법인 기타 모든 조직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신용훼손, 루머 혹은 브랜드 가치하락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2.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3.계약의 조항, 보증 또는 합의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
24.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중단, 종료 또는 그 내용의 변경에 기인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25.피보험자의 도산
26.유가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의 거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7.부정경쟁방지 관련법규에 의거한 부정경쟁에 근거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8.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29.피보험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경영, 관리하는 사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나, 피보험자의 모회사, 자회사, 계승한 사업체 및 그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단,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여, 상기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0.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누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31.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 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회의 보험사고】 1회의 보험사고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18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19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적용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③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7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②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 내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8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기록의 완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1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정보이며,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 기술 등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가 있어 그것에 의해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범죄행위	범죄행위라 함은「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상법」또는「독점금지법」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회사	직접적이든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이든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정보누출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을 말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전자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발견	발견이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하여, 다음 중 빠른 때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 제기되는 최초의 통보 ② 언론매체 또는 미디어에서의 최초의 공표 ③ 인터넷 게시판에의 기재 등 제3자에 의한 최초의 공표 ④ 피보험자의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
위문품・위로금 비용	개인정보가 누출된 개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죄를 위해서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송부하는 위문품(피보험자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서비스권, 할인권, 티켓, 회수권 등이나 피보험자만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상품 등은 제외합니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위로금 및 위문품 비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회사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합니다. 위문품 및 위로금 비용한도 : - 1인당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라 함은「특허법」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특별약관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누출의 발견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으로 회사가 타당하고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단,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에 생긴 비용에 한합니다). 단,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는 다음에 기재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원인 조사 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비용
   2) 위로금 · 위문품 비용
   3) 사과광고 게재, 우편대금 등 위기에 의해 임시로 발생한 비용
   4)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한 개인정보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
   5)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6)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
   7)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비용
   8) 제3자로부터 불합리하게 강요받은 일체의 금액
   9) 피보험자의 인건비 및 그 외 일반 관리비
3. 위기관리컨설팅회사
   회사가 승인하는 위기의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하고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누출에 기인한 위기
8.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위기

제4조(보상한도액)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보험기간 중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으로 하며, 한편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기관리컨설팅비용 보상한도액: ₩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그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로 인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형태
   4. 경찰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 규정)

이 특약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컨설팅비용의 금액"로 대체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위기가 다음에 기재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가 공적 기관에 대하여서 문서에 의해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것
2.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인터넷 그 외 유사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것

② 회사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누출의 발견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변호사로부터 법률상의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나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정기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 또는 제기되는 것에 기인한 보수를 제외합니다)
   2) 위기의 원인조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3) 전화 회선의 증설비용, 통화료 또는 통신 업무를 콜 센터 회사에 위탁하는 비용
   4)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비용
   5)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6)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7) 위로금・위문품 비용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통지를 위해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위기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 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한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써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누출에 기인한 위기
8. 피보험자가「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위기

제4조(보상한도액)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아래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조항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 : ₩
위기관리실행비용 자기부담금 : ₩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비율 : %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형태
4. 경찰서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삭제)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8호
②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③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추가)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다음의 호를 추가해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체의 신용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던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삭제)

이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0호
②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추가) 제1호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동법에 의거 처분 받은 과징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과징금은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행정상의 과징금을 의미하며 피보험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과징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고 해결 노력을 게을리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과징금이 가중된 경우 그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Ⅲ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며, 예치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①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② 최근 3개년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근 3개년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제2조(정산의 방법)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Ⅰ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납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2회 - 청약일부터 ( )개월이 경과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2회 - 청약일부터 ( )개월이 경과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3회 - 청약일부터 ( )개월이 경과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4회 - 청약일부터 ( )개월이 경과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2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2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3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4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 제2항의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 또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조항에 다음의 호를 추가해 적용합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1.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조항이 개정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합니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